

심사보고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62 |
|----------|----|

2022. 9. 16.(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2년 9월 7일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13일

라. 상정일자: 2022년 9월 16일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정범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과 지위를 남용한 권리·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행위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노력’ 과 ‘위원 지위를 남용한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금지’ 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위원의 자격상실 규정에 학부모위원의 학생 졸업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가. 조례 개정 이유

- 본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지위를 남용한 권리·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행위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내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으로 학교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제32조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교원·학부모·지역 위원으로 구성되어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학교의 예산과 결산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²⁾로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임.

- 교육에서 공정성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고³⁾,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도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⁴⁾. 「국가공무원법」 제65조⁵⁾에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수련활동, 대학 입학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초빙교사 추천,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임용·평가 등 학교운영 주요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인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8항에는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위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2) 첨부자료

3) 첨부자료

4) 첨부자료

5) 첨부자료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는 학교 교육활동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내용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학교운영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지위를 남용한 권리·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행위 금지 사항을 신설한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7조에 학생이 졸업한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생이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학교별로 학교운영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서로 다른 위원의 임기로 야기될 수 있는 혼돈을 막고 공백 없는 학교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내실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요 내용이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첨부자료]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31조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3)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를 “(운영위원회의 설치)” 로 한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를 “경우”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 ~ ⑤ (생략)</p> <p>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 ③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7조(위원의 퇴임 등)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u></p> <p>1. <u>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u></p> <p>2. <u>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u></p> |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u></p> <p><u>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7조(위원의 퇴임 등) ----- ----- -----.</p> <p>1. <u>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u></p> <p>2. ----- ----- ----- ----- <u>경우</u></p> |

<신 설>

<신 설>

<신 설>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 계 법 령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2012. 3. 21.>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1. 9. 24.>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1. 9. 24.>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28.>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 3. 18.>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20. 2. 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5.>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 2. 28., 2015. 9. 15., 2020. 4. 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 9. 15., 2020. 4. 7.>

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 9. 15., 2020. 4. 7.>

⑧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2015. 9. 15., 2020. 4. 7.>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18.>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18.]